

서울특별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864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7년 6월 2일
- 라. 회부일자 : 2017년 6월 8일

2. 제안이유

- 가.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13.1.12 개관)은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정무역 전시·홍보, 체험교실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 노하우,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 시설규모 : 252.88 m^2 (판매공간 22.25 m^2 , 나머지는 교육·전시 등 활용)
- 공간구성 : 공정무역 판매, 교육, 전시, 홍보 공간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제한경쟁입찰)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2017.9.1 ~ 2020.8.31)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추진 관련 전반적인 사항
 - 공정무역 제품 적극적으로 유통·판매
 - 방문객 대상 공정무역 홍보 활동 (리플렛 등 제작, 배포)
 - 일반시민 대상 정기적인 공정무역 교육 추진
 - 공정무역 제품 등 전시 갤러리 공간 조성
 - 기업, 카페 등 대상으로 공정무역 제품 유통채널 확대
- 소요예산 : 없음 (수익창출형)

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

- 공정무역은 제3세계 국가(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근로자 현황 등을 파악하고, 아동노동 금지, 인권존중 등의 가치를 추구하므로 해당 경력이 풍부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라 볼 수 없음.
- 지구마을은 현재 공간사용허가에 다른 공정무역 제품 판매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보, 전시, 교육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 수익형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은 추가로 소요되지 않고 공정무역 홍보, 안내, 교육, 판로지원 등 사업 확대가능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 전시 및 홍보를 위해 운영중인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운영하는 것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임.

나.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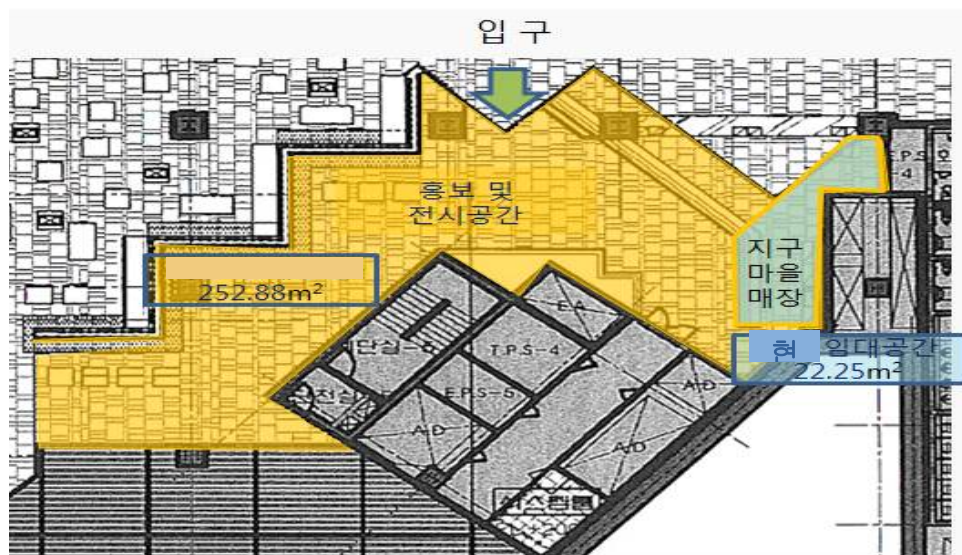
- 서울시(이하 “시”)는 2013년 시민청 지하 1층 공간에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이하 “지구마을”)을 개관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형태로 현재 ‘지구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음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개요〉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 개관일시 : 2013.1.12.~
- 시설규모 : 252.88 m^2 (판매공간 22.25 m^2 임대)
- 공간구성 : 공정무역 판매, 교육, 전시, 홍보 공간 등
- 운영단체 : 지구마을 사회적협동조합 (2016.7.25.~)
- 운영내용 : 공정무역 제품 등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카페운영
- 운영시간 : (월~토) 오전10시 ~ 오후 7시
- 사용방식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 평가위원회 및 공정무역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공정무역이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로, 시는 2012년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구마을 운영 등 공정무역에 관한 정책을 시행중이나, 지난해 한 협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정무역의 의미를 알고 있는 서울 시민은 단 27%로 아직은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부족한 현실임.¹⁾
- 지구마을은 기존 카페공간 및 사무실, 사회적경제제품 전시판매 및 홍보공간(총 252.88㎡)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현재 카페공간(22.25㎡)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무역 커피와 의류 등 약 20여종의 공정무역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공간〉



1) 공정무역 설문조사 실시, 2016년 12월, 쿠피협동조합, 15~59세 서울시민 200명 대상.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현황〉

(단위 : m²/천원/명)

연 도	2013	2014	2015	2016
운영주체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지구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임대면적(m ²)	252.88m ²			22.25m ²
임대료(천원)	201,410	201,410	208,999	28,972
매출액(천원)	525,090	595,936	612,741	672,775
방문객(명)	68,942	74,980	80,637	91,557

- 지구마을 운영사업은 2015년까지 공정무역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지방재정법 및 행자부 예규 개정(의거²⁾), 운영비용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 당시 지구마을을 운영하던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보조금지원 없이 비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표했으며, 이로 인해 2016년부터는 축소된 카페공간만을 운영하도록 허가한 것임.

- 임대면적의 축소외에도, 2016년 7월 기존에 지구마을을 운영하던 협의회에서 설립한 ‘지구마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 주체가 전환되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대부요율을 절감해주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기존 50/1000에서 10/1000으로 사용료율이 감소하여, 지구마을에 대한 임대료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지방보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대폭 감소되었음.³⁾

- 2015년까지 카페공간을 제외한 전시 및 홍보를 위한 나머지공간에 리사이클링 화분만들기, 아름다운 커피 기부캠페인 등의 행사와 iCOOP생협,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등 공정무역단체의 전시 캠페인 등이 운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임대공간의 축소로 2016년에는 전시·홍보용 공간에서 시행된 공정무역 행사나 전시내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연간 8~9만명의 시민이 지구마을을 방문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카페를 이용하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한 현실임.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 지구마을은 공간 전체를 임대 운영하며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 및 전시를 시행하던 2015년까지와는 달리, 카페공간만을 운영한 2016년부터는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시민청에 단순히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며 이름 그대로 공정무역 '가게'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제고 역할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임.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4.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시설운영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지구마을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공정무역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방식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또한 위탁운영을 통해 선정된 기관의 풍부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인식제고 및 제품의 판로지원 등 시의 공정무역정책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 민간위탁은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시는 지구마을의 운영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현 지구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여러 공정무역단체들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야할 뿐만아니라 타 수탁기관의 선정시에도 지구마을 운영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선정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함.
- 한편 지구마을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방법으로 위탁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는 별도의 위탁금없이 임대료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위탁체를 선정하여, 공정무역제품의 판매 수익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임.
- 지구마을은 2016년 2,897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약 6억 7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음. 민간위탁방식으로 변경 후에 선정될 수

탁기관 또한 최고가 입찰로 정해진 임대료를 납부하고 6억 정도의 매출액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시는 위탁 후, 수탁기관이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해 사익추구가 아닌 공공의 목적으로 공정무역의 발전 및 지구마을 운영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 시는 민간위탁 후에도 지구마을에 대한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하며, 무엇보다도 공정 무역도시 서울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도하는 지구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합한 수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해 보임.